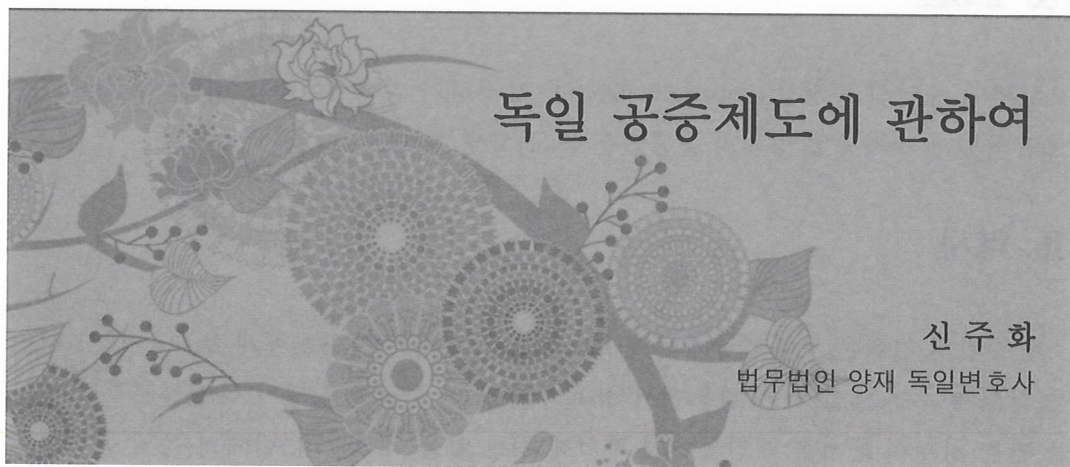




독일 공증제도에 관하여

신 주 화

법무법인 양재 독일변호사

I. 서언

독일공증시스템은 라틴계 공증으로 각인된다. 라틴계 공증시스템은 로마법 전통에서 유래 되었는데 중세 로마법 컨셉이 스칸디아비아 반도를 제외한 모든 대륙법 국가에서 관철되었고 공증인직은 1803년 프랑스 혁명법을 거쳐 독일에서도 오늘날 까지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자유업 형태로 이해되고 있다.

기능적 측면에서 독일 공증인은 비송사건재판의 한 기관, 즉 사법영역에 있어서 예방과 보호기능을 한다. 독일 공증인은 여러 종류의 민법 분야, 특히 가족법, 상속법, 부동산법, 상법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반 문서의 공증뿐 아니라 특정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적효력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공증인을 통하는 것이 필수적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독일의 공증인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계약체결자이며 분쟁의 조정인으로 알려져 있다. 공증인의 공적지위는 독일 연방공증인법(Bundesnotarordnung)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되고, 관할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에게 업무감독권이 있다. 이 외에 공증수수료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고, 독일에서 공증인직은 숫자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 이유는 공증인의 경제성을 보장해 줌

으로써 공증인의 공정성 (unparteilichkeit)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독일에서 자유업 형태의 공증인은 총 8,157명¹⁾이다.

II. 역사

공증인의 기원은 로마제국에서의 Tabellionen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수를 받고 서면을 작성해 주는 일을 하는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람들은 당시 타인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자로서 문서를 개인들에게 작성해 주는 일을 하였는데, 현재의 독일 공증인은 이 전통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중세시대의 공증인은 이탈리아 근방에서만 알려졌으나 12세기부터 알프스 북부지방에서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12세기 때 교회법의 발전은 공증인직의 교육과 유럽 전체로의 전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13세기 중반, 특히 후반 부에 공증인직은 알프스를 거쳐 북쪽으로 전파되었다. 그 이유로 이탈리아 북부지역의 확산뿐만 아니라 아마 종교재판에 기인한 것이라 추측된다.

독일에서 공증직과 공증문서가 퍼진 것도 이탈리아와 독일의 상업교류에 의해 서면작성의 필요성이 증가한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13, 14세기 때 종교재판과 연관되어 퍼지게 되었다. 종교재판은 13세기부터 재판에 있어서 서면작성이 요구되었고, 공공의 신뢰를 받는 공증인이 재판에 참석하여 그 과정을 기록하도록 요구되었다. 또한 인정된 공증인의 참석은 모든 교구의 교구재판법원의 의무이기도 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독일에서 공증인직은 종교적 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오다가 15세기경 부터 공증인은 종교재판 분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직업적 서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공증직무에 관한 독일제국의 법적 규정은 1495년의 독일제국대법원법(Reichskammergerichtsordnung) 과 1512년에 규정된 독일제국공증직법(Reichsnotariatsordnung)에 정리되었다.

III. 공증에 관한 법원(法源)

1) 통계: <http://www.bnotk.de/Notar/Statistik/index.php>, 2011. 2. 1.

공증인직에 대한 법적규정은 독일에서 연방법, 규칙, 조례와 행정규정에 분산되어 있다. 연방법틀인 연방공증인법, 공증법, 비용규칙과 연방공증인 협회의 지침은 독일 전역의 공증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1. 연방공증인법 (Bundesnotarordnung)

연방공증인법은 1937년에 제정된 제국공증인법에 토대를 둔 법으로써 1961년 2월에 개정되었고, 공증인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독일연방 전체에 통일적으로²⁾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공증인의 임명, 업무, 의무와 책임 등이 정리되어 있다. 그 외에 연방 및 주(州)공증인 협회의 설치 및 과제 그리고 공증인 직무위반 시 징계절차 등이 정리되어 있다.

2. 공증법 (Beurkundungsgesetz)

1969년에 제정된 공증법은 공정증서의 작성절차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공증인은 문서작성 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고 문서를 당사자 앞에서 낭독을 한 다음, 내용을 승인하게 하고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서에 카드, 그림, 도면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공증인이 전부 낭독하기가 힘들 경우, 비서 혹은 소속 직원이 계속하여 낭독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련의 문서작성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문서작성절차 외에 교시의무, 증서의 보관 등 공증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타인소유의 금전 보관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3. 비용규칙 (Kostenordnung)

공증인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공증인 수수료는 비송사건재판에 관한 비용규칙(Kostenordnung)에 정리되어 있다.

2) 바덴 지역의 공증사무소의 특성 때문에 현재 칼스루헤(Karlsruhe) 고등법원 관할 지역에서는 연방공증인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독일의 공증수수료에는 상담과 문서작성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안의 난이도나 업무의 양 혹은 상담횟수와 관계없이 목적가액에 따라서만 계산된다.

독일의 공증인 수수료는 특히 소비자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따라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저렴한 편이다.

4. 공증인의 직무규정(Dienstordnung für Notare)

법무부에서는 독일 전역에 통일적인 행정처분을 통하여 공증인의 직무규정을 두도록 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를 직무규정의 틀 안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공증인의 의무, 손해배상을 유발하는 사안 그리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모든 공증인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5. 공증인협회의 지침

그 외 공증인협회에서도 공증인의 직업적 의무와 기타 의무를 조례로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판사에 준하는 규정으로, 연방공증인법 제 67조 제2항에 의하면 공증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유지, 공증인 본인의 직접 업무수행 의무, 관할지역을 벗어나서 공증을 하게 될 경우 준수해야 할 원칙, 참가해야 하는 교육의 범위, 의뢰인과 관련된 다른 공증인 및 법원, 관청, 변호사 등과의 관계에서 주의하여야 할 직업의무 등의 내용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21개의 주 공증인협회에서는 연방공증인협회가 추천하는 내용에 맞추어 제정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

IV. 공증인

1. 일반적 자격요건

연방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자격의 적극적 요인으로 첫째, 공증인은 독일 국적을

가진 자라야 한다. 공증인이 공적임무수행자로서 준 공무원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독일 국적이 요구된다.

둘째, 독일에서 공증인은 유일하게 뉘템베르크(Württemberg) 지역을 제외한 모든 주에서 독일 법관법(Deutsche Richtergesetz)에 준하여 법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법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 일단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1차 국가고시를 합격한 후 2년의 연수과정을 거쳐 다시 2차 국가고시를 합격한 경우 그 자격이 주어지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는 모두 법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공증인은 특별히 우수하고 경험이 많은 법률가이고 그들의 문서는 법질서와 무경험자를 보호한다. 이러한 책임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일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법조인들이 공증인으로 임명된다. 임명까지의 오랜 기간에 걸친 집중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공증인은 공증업무의 중요성에 부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소극적 요인으로 어려운 협상(예를 들면 이혼합의서 작성)도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도 갖추어야 하고, 전문성 외에도 공증인직에 적합한 인성을 요구하고 있다.

2. 공증인의 임명

공증인은 해당 주의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해당지역의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으로부터 규칙적으로 직무감독을 받는다.

변호사와는 달리 독일 공증인직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이 필요한 시민들을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적정한 인원만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연방공증인법 제4조에 따르면 적정한 사법조정기능을 담당하기에 필요한 수만큼의 공증인만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원활하고 공정한 공증제도의 운영과 함께 공증인이 그들의 업무를 통해 적절한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많은 수의 공증인은 공증인 간의 경쟁을 일으켜 적정한 운영에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으므로 공증직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게 적정한 경제적 수입이 보장될 수 있을 만큼의 공증인만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증인직의 본질적 성격이

변호사직의 그것과는 다르므로 국가는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배려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증인 임명 시에는 직무구역과 직무장소가 기재된 임명장을 수여하고, 직무를 개시하기 전에 관할지방법원장의 면전에서 공증인직을 양심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공증사무소의 지역적 선정 또한 법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독일 전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특히 법원이나 관청, 기관들이 없는 시골 지방에서도 공증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게 조직이 되어 있다. 시민은 자신이 신뢰하는 공증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공증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직무구역을 벗어나서 공증업무를 할 수 없다.

공증인의 임기는 없으나 70세 이후에는 연금생활로 들어가며, 초임으로 공증인직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60세 이하여야 한다.

3. 공증인의 형태

1961년 공포된 연방공증인법은 바덴 뉘템베르크주를 제외한 모든 공증인에게 적용되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독일에서는 현재 세 가지 형태의 공증인이 존재한다. 독자적 전문공증인으로서 전담공증인, 변호사업을 겸업하는 겸임공증인 그리고 바덴 뉘템베르크 주의 공무원 공증인이 있다.

가. 전담공증인(Nurnotare, Hauptberufliche Notare)

(1) 성격

공증을 주 직업으로 하는 공증인을 전담공증인이라고 한다(라인강 공증인이라고도 불리었다). 전담공증인은 1791년 10월 6일 프랑스의 대혁명지령(Revolutionsdekret)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프랑스에 합병되었던 라인강 왼쪽 영역에서 1798년에, 북서독일에 의해 합병되었던 지역에서 1811년에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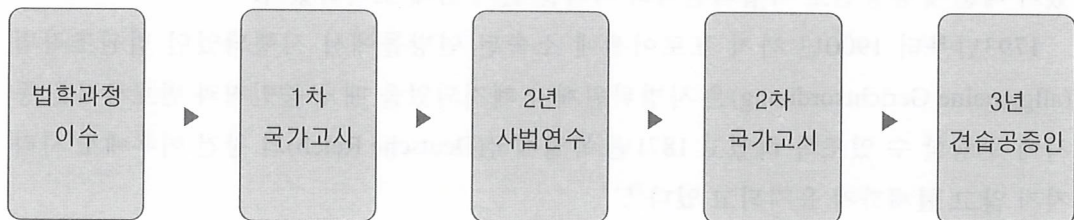
전담공증인은 주로 독일의 남부와 북부지역 그리고 이전 동독지역의 주에 분포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독일 전체의 약 2/3 지역에 해당한다³⁾. 2010년 12월 기준으로 1,582명의 전담공증인이 있으며 독일 시민 전체의 약 50%의⁴⁾ 공증업무를 맡고 있다.

전담공증인은 공증업무를 유일한 주 업무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 겸임공증인이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 반면에 전담공증인은 보수를 받는 다른 관직이나 자영업을 영위하지 못한다. 이사, 감사 혹은 기업의 자문 역할 등 소득이 발생하는 부업은 해당 감독기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지만 가능하다.

(2) 자격

전담공증인이 되려면 자신이 차후 공증인으로서 일하기를 원하는 지역의 주 법무부에 견습공증인(Notarassessor) 자리를 신청해야 한다. 견습공증인으로서 임명되기 위해서는 법관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견습공증인은 국가고시결과 중 최고위 합격자에 속한다⁵⁾. 이러한 최우수 법조인으로 공증인을 구성시킴으로 공증인은 높은 사회적 신망과, 그리고 제한된 임명과 법으로 규정된 수수료에 의해 고소득을 보장받게 된다.

견습공증인은 주공증협회로부터 교육을 위해 특정기간동안 공증인에게 인도되어 공증실무를 익히게 된다. 동시에 그는 해당 지역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증인을 휴가나 병가 기간에는 대리를 해야 한다. 견습공증인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이 된다.



3) 바이에른 주(Bayern), 라인란드 팔츠(Rheinland-Pfalz),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s)의 일정 부분, 바덴 뷔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소수), 함부르크(Hamburg) 잘란드(Saarland) 그리고 구 동독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4) C.U. Schmid / T. Pinkel : Die Regulierung rechtlicher Dienstleistungen bei Grundstücksgeschäften zwischen Wettbewerbs- und Verbraucherschutz, Europarecht, Vol. 3 No.1, 2007, 7면

5) 주로 2차 국가고시에서 상위 5%의 범위 내에 속한 자가 임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소 3년 이상의 견습기간이 지난 견습공증인은 그가 속해있는 협회구역에서 공식이 된 공증인 직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이 받아 들여졌을 경우 공증협회의 면담을 거쳐 주 법무부에 의해 공증인으로 임명되며, 자신의 직무장소가 정해지는데 직무장소는 일반적으로 공증인이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법원 구역이다.

나. 겸임공증인 (Anwaltsnotar)

(1) 성격

1961년 4월 1일 이전에 변호사업을 겸업하는 공증인으로 구성된 법원지역에서는 현재 변호사가 공증인직을 겸임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독일 전체의 약 1/3에 해당되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⁶⁾.

겸임공증인은 프로이센의 전통에서 유래하며 대부분 독일의 북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18세기에 프로이센 왕국에서 변호사(Advokat)제도와 더불어 공증인직제도(Notariat)가 발전되어 왔는데, 당시 사법위원(Justizkommissar)은 국가기관 형태의 변호사집단(Rechtsanwaltschaft)의 대리인이었다. 사법위원과 법원은 문서작성 사무도 담당했기 때문에 공증인도 사법위원직의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1793년부터 1900년 까지 프로이센에 소속된 연방들에서 시행되었던 법원조직법(allgemeine Gerichtsordnung)은 사법위원제가 폐지되었을 때 공증인직과 변호사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1871년 독일제국(Deutsche Reich)의 창건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⁷⁾.

2010년 12월 기준으로 6,575명의 겸임공증인이 허가되었으며 전체 독일 시민의 약 35%에 해당하는 시민들을 공증업무로서 관리하고 있다⁸⁾.

겸임공증인으로 허가를 받은 공증인은 그들이 공증업무로서 담당하고 있는 시민 수가 전담공증인에 비해 적지만 공증인 수는 훨씬 많다. 이 수치는 겸임공증인은 공증업무보다는 변호사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 브레멘(Bremen), 베를린(Berlin), 슐레스빅-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니더작센(Niedersachse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일부분(Teilen Nordrhein-Westfalens), 헤센(Hessen), 바덴-뷔템베르크(Baden-Württembergs) 일부분.

7) <http://de.wikipedia.org/wiki/Notar>, 2011. 1. 19.

8) C.U. Schmid und T. Pinkel, 앞의 논문, 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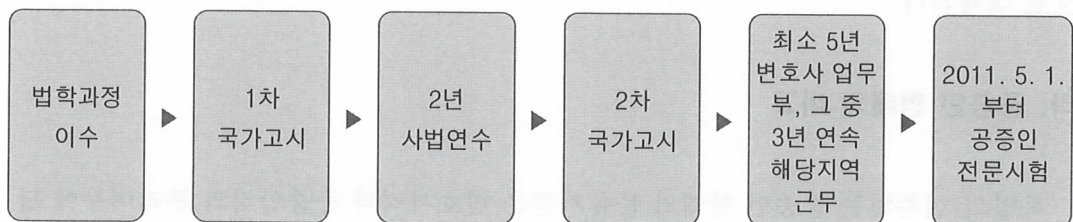
(2) 자격

변호사공증인이 되기 위해서 변호사는 최소 5년 이상의 직업경험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공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연속해서 최소 3년 이상 변호사를 주 업무로 하여야 한다.

겸임공증인은 공증업무가 자신의 유일한 소득원은 아니므로 변호사겸임 공증인 임명 시 실시되는 필요성 시험에서 조금 덜 엄격히 실행되고 있었다.

2010년 까지는 공증업무에 관한 전문성에 대한 입증으로 우선 겸임공증인을 위한 기초과정의 이수로 기본적인 입증이 가능하였다. 공증인직을 신청한 변호사 중 겸임공증인의 선발기준은 주로 변호사로서의 활동연수와 공증에 필요한 법률영역에 대한 추가 교육을 이수한 횟수에 의해 결정되었다.

변호사겸임 공증인은 전임공증인에 비해 그들의 공증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전임공증인에 비해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에 공포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겸임공증인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1년 5월 1일 부터는 연방에서 제공하는 공증직 수행에 대한 전문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⁹⁾.



다. 공무원공증인 (verbeamteter Notar)

마지막으로 독일의 바덴 뷔템베르크 주에는 공무원공증인이 있다. 이 지역은 스튜트가르트(Stuttgart)와 칼스루헤(Karlsruhe) 고등법원관할 지역으로 전체 독일 인구의 약 13%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총 630여 명의 공증인¹⁰⁾이 있다.

9) 제1회 공증인 전문시험 ; 2010. 9. 총 187명의 시험예비자들이 선발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공증인 시험은 5시간의 필기시험으로 모두 4과목이고, 한 번의 구두시험을 치러야 한다.

10) 이 중 2010. 12. 기준으로 전담공증인은 43명, 겸임공증인은 75명이다.

바덴지역의 공증인은 법관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 중에 임명되지만 공공직을 수행하는 자유직에 속하지 않고, 즉 공적임무의 독립적 수행자가 아니라 고위 공무원에 해당한다(Amtsnotar). 따라서 법관 공증인(Richter-Notar)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뷰템베르크 지역에서는 구역공증인으로서(Bezirksnotar) 정식 법조인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공증인 아카데미(Notarakademie)에서 5년간의 교육을 받고 졸업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증직을 맡게 된다. 현재 이 지역에는 공무원 공증인 외에도 전담공증인과 겸임공증인이 함께 병존하고 있다.

바덴 뷰템베르크 주의 공무원공증인은 일반적인 공증인 직무 외에 비송사건에 있어서 다른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는데, 특히 상속재산관리, 부동산 등기업무, 후견사건 및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업무에 있어서 법관의 역할도 담당한다. 공무원공증인은 많은 종류의 업무를 실행하고 있고 그 교육과정도 충분하지 못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공증인 형태, 특히 전담공증인에 비해 질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 때문에 1991년경 부터 공무원공증인의 폐지가 주장되어 왔는데, 2005년에 이 지역에 전담공증인만 허가해 주는 것으로 법률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 정치적 결정에 의해 공무원공증인은 2017년까지만 존재하고 2018년부터는 모두 전담공증인으로 대체된다.

라. 공증인 형태의 비교

독일의 현존하는 공증인 형태의 분류기준은 변호사직과 공증인직의 분리여부에 달려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공증인이 성립하게 된 원인은 제국공증인법(Reichsnotarordnung) 제정 이전의 각 지방별로 발전되어 온 공증제도가 통일적 입법과정에 반영된 결과에 있다.

현행 독일공증제가 겸임공증인제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역사적 산물로서 이를 철폐하고자 하는 입법방향에 대하여 종래의 겸임공증인 집단이 반대하고 일어선 결과 성립된 타협적 산물이다¹¹⁾.

변호사직과 공증인 직이 분리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양직의 본질적 차이에서

11) 김황식, “독일의 공증제도에 관한 고찰”, 사법행정 244 (1981. 4.), 105면.

찾을 수 있다. 즉 변호사는 이해관계의 관리자로서 사적대리인임에 대하여 공증인은 불편부당한 중립적 입장에서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중개적 조인자이다.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직무를 한사람이 수행함으로써 불합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겸임공증인은 따라서 특정사안에 대해 자신이 변호사로서 혹은 공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표현을 하여야 한다. 공증인으로서 업무수행을 할 경우 전문공증인과 똑같은 수준으로 연방공증인법에 의하여 수행을 해야 하는데, 특히 공정성에 관한 의무를 들 수 있겠다. 이에 반해 변호사로서는 변호사에 적용되는 법적, 신분적 규정에 의거하여 자신의 의뢰인의 관심사를 대행할 의무가 있게 된다. 특정 경우에는 가끔 이 두 업무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겸임공증인의 장점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험부담이나 결과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의 변호사적 실무가 도움이 된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공증인과 변호사 직 사이에 이해충돌이 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독일 연방공증인법 제14조에 의하면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공증인과 변호사라는 직업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특정 상황에 있어서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겸임공증인은 일반적으로 공증업무보다 변호사 업무활동을 더 많이 처리하는 관계로 전문공증인에 비해 공증 전문성이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높은 전문성 외에도 전임공증인은 다른 공증인 형태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공증직무수행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에 관한 통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전담공증인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겸임공증인제를 실시하는 지역보다 공증기술, 특히 법률문제의 협의의 기술이 훨씬 발전하여 공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예가 훨씬 적다는 것이다¹²⁾. 공증인으로서의 직무수행에는 광범한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공증에 연관하여 문제되는 사항에 대한 오랜 경험과 공증고유의 정형적 업무처리에 대한 숙달이 또한 요구된다. 즉 이러한 경험과 숙달을 쌓기에는 전담공증인이 겸임공증인 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하겠다.

12) 김황식, 앞의 논문, 106면.

구 동독지역의 공증인 또한 공무원 공증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독일 통일 후 1990년~1991년에 전담공증인으로 대체되었다.

4. 대리공증인(Notarvertreter)

공증인이 원활한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로 제한이 되어 있으므로 만일 어떠한 공증인이 일정기간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공석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연방공증인법 제38조에 의하면 공증인이 일주일 이상 직무장소를 이탈하거나 또는 사실상의 이유(예를 들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감독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감독기관에서는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공증인이 1개월 이상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기관은 해당 공증인의 신청에 의해 대리인을 임명한다.

V. 공증인의 직무

1. 공증인직의 성격

공증인직의 특징적 성격은 국가권력 및 위임자에 대한 독립성(Unabhängigkeit)에서 나타나고, 관계당사자로부터 독립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불편부당한 조언자이다(Unparteiischer Betreuer).

공증인은 예방사법영역에서 공적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 받았고 법률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법원에서 증거력 있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를 작성한다. 공증인은 문서의 당사자를 그들의 의사가 문서화 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상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이는 자신의 업무를 거절할 수 없다.

2. 공증인의 직무 역할

가. 예방적 법률감독(Präventive Rechtskontrolle)

공증인을 통한 예방적 법률 감독은 경험이 없고 미숙한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고 장래의 분쟁방지를 위한 법적근거 혹은 증거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공증인의 예방적 법률감독은 법원의 분쟁결정에 대해 실질적 보충 기능을 가진다. 공증인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사전(事前)적 판사’로서 독자적인 심사권한과 결정권한이 주어진다.

공증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증업무의 수행을 통해 공법적으로 기획된 사법절차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법적결과를 가져다주는 결정을 하는 국가의 사법보장의무를 수행한다. 공증을 필요로 하는 법률관계에서는 오직 공증을 통해서만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 체결된다. 시민의 사법보장청구권(Justizgewährungsanspruch)이 판사로 하여금 분쟁을 결정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서보장청구권(Urkundsgewährungsanspruch)은 공증인으로 하여금 합법적 문서작성행위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공증법(Beurkundungsgesetz) 제4조에 따르면 허가되지 않거나 부정직한 목적을 위해 공증인의 역할을 요구받을 경우에 공증인은 공증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집행인의 역할

공증인의 임무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는 데에 끝나지 않는다. 공증 후에는 공증된 의사표현을 실행에 옮기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예치된 금전을 보관하기도 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주고 상업등기소나 등기부에 등기신청도 해야 한다.

공증인의 집행인 역할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의 공증인의 역할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부동산거래에는 여러 종류의 업무영역이 있다. 부동산 중개사의 역할, 기술적 감정의 업무 등은 거래 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해 임의적으로 맡길 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의 공증과 계약의 실행에 대해서는 독일법에 의하면 공증인이 하도록 되어 있다. 민법상으로 공증인이 참여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거래는 법적으로 무효이며(독일민법 제311b조), 법적 업무수행으로는 거래당사자의 상담, 부동산매매계약의 작성과 실행

을 담당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Auflassung)는 공증을 받아야만 법률효력이 있다. 그 이유는 시민들로 하여금 개인적 혹은 경제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는 특별한 형식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성급하거나 무경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공증인은 당사자 간의 약정을 공증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실무를 집행한다. 즉 소유권이전을 위해 관공서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근저당권자에게 연락하여 그 금액을 파악하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자에게 직접 대금을 입금시키게 하며 근저당권 말소동의를 받아 말소신청을 한다.

또한 공증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사본을 국세청에 발송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취득세를 납부하게 한 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관련 해결통지서를 받게 되면 등기소에 등기이전 신청을 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절차상의 업무로 인해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대금지급일을 지정하지 않고, 매수인은 공증인으로부터 차후 대금지급에 대한 연락을 받게 되면 그 때 대금을 지급한다.

부동산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기도 하지만 약정에 의해 공증인의 일시예치구좌에 입금하여 소유권이전 절차가 끝난 다음 공증인이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절차가 공증인의 개입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처리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소유권이전이 확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증인은 가등기를 하여 준다.

다. 조정기관(Gütestelle)으로서의 역할

특정 분쟁사안에 대해서는 주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조정기관을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한 후 조정이 무산이 되는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종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증인은 주 법무부로부터 조정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조정기관으로 인정된 공증인 또는 비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동시에 조정인으로 인정한 공증인은 조정을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한다. 이때 공증인의 조정결정은 독일 민사소송법 제794조 제1항에 의한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공증인은 또한 법률문제의 조절자로서 협의이혼 과정, 상속분배 등의 사안에 대해 중립적 위치에서 분쟁방지, 중재, 조절 등 조정자의 역할도 수행한다.

3. 공증인 직무의 종류

가. 법률문서의 작성과 공증

공증인은 법률문제에 관하여 당사자의 자문에 응하고 그 법률사항이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한다. 법률에 의하여 어떠한 의사표시가 공적으로 인증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증하고 서명을 인증한다.

이 외에도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각종의 총회의사록을 공증하고 복권을 비롯한 각종 추첨을 관장하며, 당사자의 위임 혹은 법원이나 행정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 재산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관리가 개시되기 전, 또는 상속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속법원은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중에 재산의 봉인, 발인(*Anlegung und Abnahme von Siegeln*)을 공증인이 담당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공증인은 그가 직무상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법률상 필요한 고지, 최고, 취소의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연방공증인법 제20조 제1항).

나. 부동산 소유권이전 의사표현의 공증

독일민법 제925조에 의하면 부동산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법률에 의해 인정된 기관에 동시에 참석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의사표현을 해야만 하는데 공증인 또한 이러한 소유권이전의 의사표현을 접수하여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인정된 기관에 속한다(동법 제20조 제2항).

다. 수의적 경매 (*Freiwillige Versteigerung*)의 집행

강제경매절차가 아닌 수의적 경매의 실시, 예를 들면 건물의 구분(區分)소유권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해야 하는 판결을 받게 되면 수의적 경매가 시행되는데 이를 공증인이 담당한다. 이 때 공증인은 경매신청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공적 업무의 수행자로서 경매절차를 주도한다. 또한 주(州)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증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정리를 위한 중재를 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제3항)

라. 대리권의 증명

공증인은 공증이나 서명의 인증을 함에 있어 대리권존부에 대한 증명, 예를 들면 특정 기업의 상업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후 어느 시점에 누가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대리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동법 제21조 제1항).

마. 서약(Eide) 및 서약에 갈음한 보장(eidesstattliche Versicherung)의 청취

외국법 또는 외국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서약 또는 서약을 위한 신문이 요구되는 때에 공증인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약을 청취하거나 서약을 위한 신문을 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바. 보관(Aufbewahrung)

공증인은 보관이나 제3자에의 전달을 위해 당사자로부터 맡겨진 현금, 유가증권, 귀중품 등을 관리할 수 있다(동법 제23조).

4. 공증인의 업무영역

공증인의 핵심 업무영역은 특히 부동산법(부동산 소유권 변경, 저당권), 상속법(유언 공증, 상속계약, 상속증서신청 등), 가족법(혼인계약, 친자인정의사표현, 생활비지급의 무 등), 회사법(유한회사, 주식회사 설립, 정관변경, 상업등기신청 등) 등이 있으며, 부

동산매매계약, 회사설립약정서 혹은 상속계약 등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공증을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가 있고, 유언장처럼 공증이 가능한 법률행위가 있다.

독일에서 의무적으로 공증을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 중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등기부분이다.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는 간단한 변경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우에 공증인의 개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에 대한 합의도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효력이 발생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또한 공증을 받아야만 등기가 가능하다. 또한 법인설립 혹은 자본금 증가 시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그 출자의사는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

상속 관련 약정, 즉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상속포기, 유류분의 포기 등에 대한 약정도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효력이 있다. 자녀 중 한 사람이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받고자 할 때 상속포기약정을 공증 받아 두지 않으면 차후 상속인에게 제외 되지 않는다.

법인설립시의 정관도 공증을 받아야만 하고, 부부재산약정도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무상증여일 경우 증여자의 증여의사도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효력이 있다.

특정 법률거래에 있어서 공증인을 통한 공증을 법으로 의무화 하고 있는 이유는 입법자가 당사자에게 개인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무경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부동산매매의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법적 흠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권자로 등기될 수 있는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개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공증을 필요로 하는 계약서는 당사자 혹은 변호사 외에 공증인도 작성할 수 있다. 공증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실무에 밝지 않고 경험이 없는 당사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명과 교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급부와 반대급부의 형평성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증인은 개입할 수 없고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하도록 하지만, 작성된 계약서와 관련된 위험부담에 대한 형평성은 설명해야만 한다.

5. 공정증서의 효력

가. 증거력 확보

공증된 문서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공적증거력의 확보에 있다. 문서상의 당사자, 장소, 시간 그리고 공증된 의사표현에 대한 공증인의 확인은 독일 민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라 법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고 공증인이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해석과 관련된 판사의 권한이 제한된다.

나. 집행기능

공증된 문서는 일반적으로 법원결정으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집행권원의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자신의 청구권을 관철시키는데 시간과 비용이 따르는 소송을 절약할 수 있다. 독일 민사소송법 제797조 제2항에 따른 집행권원의 부여와 집행문 발급에 대한 공증인의 관할은 그들의 공적 권한을 표현하기도 한다. 집행문은 집행기관의 행위를 위한 침해권(Eingriffsermächtigung)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능적으로 법원에 부여된 독자적 권한을 공증인이 수행하는 것이 된다.

다. 공정증서의 보관

공증된 문서의 원본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이 보관한다. 다만 공증된 유언장과 부부재산계약서는 해당관청으로 송부한다. 차후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장으로 구성된 공정증서는 실로 묶고 압인을 해서 보관한다.

라. 전자공증문서

독일 공증법 제30a조에 의하면 전자문서에 대하여서는 공증인의 자필서명 대신 공인된 전자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공증인은 연방공증인협회 산하의 자격증명기관(Zertifizierungsstelle)에서 시행하는 증명서 발급절차를 통해 전자서명카드

를 발급 받는데 이 때 어떤 공증인이 서명카드를 사용하여 어떠한 전자문서를 공증하였는지 프로그램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다.

독일에서 현재 전자공증문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실무상의 의미는 상업등기절차에 있다. 상업등기절차와 관련되어서 등기신청서 혹은 법인설립문서 등 종래에는 종이 문서에 공증해 오던 것이 독일에서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형식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실무상 상업등기신청과 같이 “공적으로 인증된 전자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안은 현재 다음과 같이 실행되고 있다: 먼저 종래와 같이 종이 문서형식의 상업등기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자필서명을 받고 공증인은 이 문서에 자필 서명하여 문서를 인증한다. 그 다음 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옮긴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전자 등본을 발행하는 것이 된다.

VI. 공증인의 의무와 책임

1. 의무와 민사책임

가. 직무수행상의 일반적 의무

공증인은 공적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그가 임명될 때 행한 선서내용에 합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연방공증인법 제14조). 공증직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이유로 인해 공증인은 자신이나 자신과 가까운 친인척의 사안에 대해서는 공증할 수 없다.

나. 직무수행의무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공증업무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독일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문서를 공증할 의무는 없다. 공증요구가 거절된 경우 당사자는 지역법원(Landgericht)의 민사부에 항고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다. 공증수수료 수령의무

공증인은 자신의 공증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비용규칙(Kostenordnung)에 따라 수령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규칙에 따른 수수료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요금합의, 할인 혹은 증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수수료의 정상적 수령에 관하여 주 공증회계소(Notarkasse)가 심사한다(동법 제17조).

라. 비밀보장의무

자신의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비밀보장의무의 여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문의 하여야 하며, 이 비밀보장의 원칙은 공증인직을 그만 둔 뒤에도 준수해야 한다(동법 제18조).

마. 교시의 의무(Belehrungspflicht)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의사표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작성된 공정증서의 법적효과, 즉 법률행위의 효력과 결과 및 집행과 종국처리, 대리인의 경우 유효한 대리의 설명과 대리의 효과에 관해서도 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착오나 의문을 피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교시하여야 한다.

공증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많은 부분이 교시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고 있는 만큼 공증인의 교시의무는 공증인의 책임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써 공증인은 일반적으로 공정증서에 교시이행문구를 기재하고 있다(공증법 제17조).

바. 직업보험의 가입의무와 손해배상책임

공증인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연방공증인법 제19조와 민법 제839조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고의가 아니라 공증인의 업무실수로 인하여 배상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증인 개인이 아니라 먼저 보험회사 혹은 다른 손해 유발자가 있을 경우 제 3자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문제 때문에 독일의 모든 공증인

은 직업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전담공증인과 겸임공증인 같이 자유업 형태의 공증인은 공증인의 직무위반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지만 공무원 공증인일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국가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공증인은 직업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묻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편이다.

보험금 약정금액에 대해서는 공증인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건당 최소 500.000.- 유로화가 되어야 한다(연방공증인법 제19조, 제19a조).

2. 징계책임

가. 직무감독기관

공증인에 대한 직무감독권 한은 관할 지역법원장(Landgericht), 고등법원장(Oberlandesgericht) 및 해당주의 법무부에 있다. 감독기관에서는 공증인의 직무를 규칙적으로 심사, 감독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도 중간시험을 치르게 한다거나 일정 수의 공증인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심사할 수도 있다.

새로 임명된 공증인은 처음 2년 이내에 업무능력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업무 수행 평가뿐 아니라 증서원부나 인증부 같은 장부와 개인관련 데이터가 담긴 접수부 등이 규정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공증인이 직업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는지와 공증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는지 등 공증인직의 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법무부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연방공증인법 제93조).

나. 징계의 종류

공증인이 자신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연방공증인법 제97조에 따라 견책, 과태료 부과, 면직의 징계가 내려진다. 견책과 과태료는 감독기관의 징계처분결정에 따라 내려지나, 면직은 징계법원(Disziplinargericht)의 징계절차에 의해 내려진다. 징계법원의 1심은 고등법원이, 2심은 대법원이 된다.

면직은 법적 결정이 확정되면 전담공증인일 경우에는 현재 담당구역에서 공증인직

을 상실하고 다른 지역에 배정을 받게 되며, 겸임공증인일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공증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과태료는 공증인에게는 최고 50.000.- 유로화를, 견습공증인에게는 최고 5.000.- 유로화를 부과할 수 있으며, 견책과 과태료는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직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3. 해임

공적임무의 독립적 수행자로서 공증인은 공증직 수행에 있어서 엄격한 직업적 요구를 받게 된다. 신뢰감과 직업적 위상의 유지를 위해 공증인은 특정 조건 아래 자신의 공증인직을 잃어버릴 수 있다.

전담공증인일 경우 주 법무부가 공증인협회의 동의를 받아 특별히 승인을 한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보수를 받는 부업을 하는 경우 공증직에서 해임되며, 겸임공증인일 경우에는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일반적으로 변호사직에 허용되는 업무 외의 보수를 받는 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된다(연방공증인법 제50조).

또한 공증인이 자신의 개인 재산을 상실한 경우, 즉 공증인의 개인재산에 대해 파산 개시가 되는 경우에도 공증직을 상실한다(동법 제50조). 그리고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증인도 형사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공증직을 상실하게 된다(동법 제49조).

VII. 공증인 조직

1. 연방공증인협회(Bundesnotarkammer)

모든 공증인협회는 공법적 단체이며 주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다. 감독의 범위는 공증인 협회가 법과 조례를 준수하는지, 특히 협회에 전가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제한된다.

연방공증인협회에서는 독일의 공증인을 국내, 국제적으로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다. 공증인직과 관련된 연방의 입법절차에 관여하고 공증인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관리한

다. 또한 독일공증인협회 전체의 관심사에 대해 각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의 의견을 파악하고 협회의 관심사를 관할법원과 관공서에 관철시키는 노력을 한다.

2. 주(州) 공증인협회(Landesnotarkammer)

해당 고등법원 관할지역의 모든 공증인은 의무적으로 주 공증인협회에 가입이 된다. 주 공증인협회에서는 조례와 직업윤리 지침을 통해 협회에 소속된 공증인의 위상을 감시하고 감독기관의 감사업무를 지원하기도 하며 공증인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으로는 공증인 직위와 관련된 관심사를 외부에 관철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증인들의 사적인 부분을 감독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 공증인들에 대한 의뢰인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하며 공증인과 견습공증인의 교육을 책임지기도 한다.

현재 독일에서는 공법적 단체로서 21개의 주 공증인협회가 있고, 공증인이 공무원 신분인 바덴지역과 뉘템베르트 지역에서는 각각 사법적 단체로 공증인회가 하나씩 있다.

3. 공증인연구소(Notarinstitut)

그 외 연방공증인협회는 그 산하에 공증인에게 학술적 자문을 해 주는 공증인연구소를 두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연방공증인협회와 연구소에 가입된 주 공증인협회와 그 협회의 소속 공증인을 지원한다. 모든 공증업무와 부속업무에 대한 자문을 하지만 공증인의 권리와 수수료에 대한 자문은 하지 않는다. 특히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히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는 사안을 공증할 때 학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VIII. 결어

사회적 경제적 생활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법률생활상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그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통하여 법률생활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독일에서는 공증제도 활용의 중요성이 이미 부각되어 있다. 특히 문서의 진정성에 관한 형식적 증거력의 부여 외에 법률적 분쟁예방조절자로서의 적극적 기능이

독일 공증제도의 특징적 성격을 이루고 있다.

공정증서는 증거력과 집행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반 법률거래에 있어서 특별한 신뢰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공정증서가 독일에서는 특별히 유능한 법조인, 즉 공증인에 의해 작성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증인이 그들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분쟁예방의 기능을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공증인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로 공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변호사에 대해 겸임공증인 임명을 위한 공증인 전문시험이 새롭게 도입되었고, 현재 공무원공증인은 전담공증인으로 교체될 것이며 공증인에게 지속적인 교육의 의무를 부가하고 있다. 